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5. 20 (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이민석 의원 외 9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이민석 의원 외 9명
- 제안일 : 2020. 5. 12.
- 회부일 : 2020. 5. 13. (의안번호 : 20 - 41)

2.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함(안 제4조)
-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국민의 책무)

5. 참고사항

-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5개 구 제정
 - 2019년 제정(광진구, 양천구)
 - 2020년 제정(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 1회용품의 종류 : 첨부

6.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회용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
- 안 제5조는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는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
- 안 제7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8조는 공로가 있는 업체를 표창할 수 있는 규정
-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쓰레기 소각 및 매립할 수 있는 공간축소와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문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종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1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후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25% 이상 늘어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구에서는 1회용품이 사용 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세척 후 분리수거 등 교육 및 홍보,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